# ㈜우리금융지주-우리벤처파트너스㈜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## (개인 거주자用)

※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소액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, 소액주주가 아닌 개인 대주주(지분율 2% 이상혹은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이상인 주주)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다만, 증권거래세는 개인 소액주주 및 개인 대주주 모두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가액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(상세내용은 본문 참조).

#### [유의사항]

- 1.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2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**세무전문가의 자문**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3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, 세무신고·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1-628-6480(우리벤처파트너스㈜ IR부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#### 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#### 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

- 가. ㈜우리금융지주(이하, "지주") 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㈜(이하, "벤처파트너스") 주식의 포괄적 교환(이하, "본건 포괄적 교환")에 대하여,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(이하 "대주주")는 2024년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(예정)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나.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,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대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합니다.
  - (1) 2022 년말 지분율이 2% 이상(\*)이거나,
  - (2) 2022 년말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(\*)2022 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, 2023 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기준 지분율(2%)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로 봅니다.
- 다.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총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지주 주식수와 지주 주식의 본건 포괄적 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.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,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주식보유기간 구분	과세표준 구간별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
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	33%(지방소득세 3% 포함)
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	과세표준 3 억원 이하 구간: 22% (지방소득세 2% 포함)
	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: 27.5% (지방소득세 2.5% 포함)

#### 2. 증권거래세 과세

- 가. 본건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,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(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)을 의미합니다.
- 나.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Ⅱ.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
#### 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

- 가.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,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(이하 "대주주")는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(예정)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나.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,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대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합니다.
  - (1) 2022 년말 지분율이 2% 이상(\*)이거나.
  - (2) 2022 년말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
    - (\*)2022 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, 2023 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기준 지분율(2%)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로 봅니다.
- 다.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벤처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는 벤처파트너스 주식 1 주당 가액입니다.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,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주식보유기간 구분	과세표준 구간별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
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	33%(지방소득세 3% 포함)
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	과세표준 3 억원 이하 구간: 22% (지방소득세 2% 포함)
	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: 27.5% (지방소득세 2.5% 포함)

### 2. 증권거래세 과세

- 가.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(위 제 1 항 참조)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.
- 나.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